

2026년 청렴 교육 운영 지침

< 2026. 2. 감사관 청렴기획담당 >

【 주요 내용 】

적용 모든 교직원은 2026년 9월까지 총 2시간 이상 청렴 교육 이수

▶ 4급(상당) 이상과 연도 중 신규·승진 임용된 자는 반드시 대면 교육 1시간 이상 포함 이수

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

▶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, 결과보고서에 교육 방법 (“마이크와 웹캠을 구비하고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”)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

내용 반부패 법령(청탁금지법, 이해충돌방지법, 공무원 행동강령 등), 청렴 정책

▶ ‘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’과 통합 가능, 음주운전 예방 교육은 통합 불가

□ 목적

- 공직자 청렴 의식 제고를 통한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

□ 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1조의2(공직자 부패방지교육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(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)
- 「2026년 부패방지 교육 운영 지침」(국민권익위원회, 2026. 1.)

□ 방침

- (적용)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공립 유치원, 공·사립 각급 학교 소속 교직원
※ 교육공무직원, 계약제교원 포함
- (운영) 모든 기관은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청렴 교육 실시
 - 교육 결과는 결과 보고서에 교육 일시 및 이수 인정 시간, 교육 방법 및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고, 이수자 명단과 등록부를 첨부하여 결재받아 관리
- (기간) 2026. 2.~9.(8개월)

○(기준)

- 모든 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(총 2시간) 이상 청렴 교육 실시
- 모든 교직원은 연간 총 2시간 이상 청렴 교육 이수
- 4급(상당) 이상 및 2026. 1. 1~9. 30. 중 신규·승진 임용된 자는 반드시 운영 기간 내에 **1시간 이상의 대면 교육** 포함하여 이수
 - ※ 2026. 10. 1.~12. 31. 중 신규·승진 임용된 자는 2027년 내에 1시간 이상의 대면 교육 이수하여야 함

< 참고 - 신규·승진자 이수 여부 판단 >

- 신규·승진 임용일 전이라 하더라도, 해당 연도 중 대면 청렴 교육을 이수했다면 이수 인정
(예: 2026. 7. 1. 자 승진자가 2026. 5. 1.에 대면 청렴 교육 이수 ≡ 이수 인정)
- 「신규(승진) 예정자 직무 연수」에서 대면 청렴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, 신규·승진 임용 연도 중 이수한 것이 아니라면 이수 미인정
(예: 2026. 1. 1. 자 승진자가 2025. 11. 1.에 대면 청렴 교육 이수 ≡ 2026년 실적 미인정)

○(방법) 대면 교육 권장, 기관 사정에 따라 비대면 교육 가능

- 화상회의 시스템(ZOOM 등)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교육은 결과 보고서에 교육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*된 경우에 한하여 대면 교육으로 인정
 - * ① **개인별 마이크와 웹캠을 구비**하고, ② **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**하였음을 명시

< 참고 - 교육 방법별 유형 >

- 대면 교육
 - 각 기관 자체 집합교육, 교육훈련기관 주관 집합교육
 - 실시간 화상교육(개인별 마이크와 웹캠 구비,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)
- 비대면 교육
 - 사이버교육(교육훈련기관 원격연수 등), 시청각교육(유튜브, 영상 교육 등)

○(내용) 청탁금지법, 이해충돌방지법, 공무원 행동강령,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법령 또는 청렴 정책

- 반부패 법령을 통합하여 교육 실시 가능
- ‘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’ 과 청렴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 가능
 - ※ ‘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’은 「근로기준법」과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에 근거한 교육으로서 부패방지와 관련성이 적으므로, ‘갑질 예방 교육’과 통합하여 실시하지 않고 단독으로 실시할 경우 청렴 교육으로 인정 불가(근거: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)
 - ※ ‘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「2026년 갑질 근절 계획」참고
- 음주운전 예방 교육은 청렴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
-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실제 청렴 교육에 소요된 시간만 인정

○(강사) 기관장 또는 청렴교육 전문강사* 권장

- 기관 사정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(이해충돌방지담당관, 행동강령책임관), 감사·청렴 업무 담당자 등이 강의 가능

* 청렴교육 전문강사: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교육 전문강사 등록자
(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 > [청렴교육 강사 조회](#) 클릭)

참고

청렴 교육 관련 법령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88조의2(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)

-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,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, 시청각교육,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(對面)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
 2.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2조(교육 등)

-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·내용·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,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.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

제24조(교육 및 홍보 등)

-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.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」

제30조(이해충돌방지 교육)

-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·내용·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「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」

제26조(교육)

-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.
- ② 교육감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.

「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23조(교육)

-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익제보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